

중국의 혁명역사기록물의 목록기술과 검색분류(2)

이 승 휘*

1. 머리말
2. 기록관리업무의 표준화
3. 혁명기록자료 목록센터의 건립
4. 혁명역사기록의 출처급 목록기술의 전산화
 - 1) 출처급 목록기술
 - 2) 무지화관리(無紙化管理)(이상 이전호)
5. 혁명역사기록의 문건급 목록기술
 - 1) 기술세칙(記述細則)
 - 2) 검색어
6. 혁명역사기록의 검색분류
 - 1) 실제분류와 검색분류
 - 2) 검색분류의 구조와 내용
7. 맺음말

*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교수

주요논저 : 「5·30운동 이후 중공의 당내 의견대립에 대하여」 『동아시아연구』2, 1997. 4 ; 「1920년대 말 南京國民政府와 上海商工階層」 『중국근현대사의 재조명 2』,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지식산업사, 1999 ;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기복학연구』1, 2000. 4.

5. 혁명역사기록의 문건급 목록기술

1) 기술세칙(記述細則)

앞장에서 언급한 바 문건급목록을 만들 때 파일급목록의 내용도 반영한다는 방침 하에, 출처급(全宗級)목록을 완성한 후 곧바로 문건급목록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건급목록의 작성과 전산화(無紙化管理)가 연결되어 있음도 언급한 바이지만, 이는 단순히 전산화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위해 기록보존소가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능동적 적응을 위한 것이었다.

문건급목록에 대해 무지화관리를 실행하는 문제는 대세이다.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달은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은 전자정보망시대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전자정보망시대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들은 능동적으로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 기록보존소는 한편으로는 대량의 정보자원을 갖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 기록관리체제와 수공조작(手工操作)의 방식은 대량의 기록정보를 충분히 들어낼 수 없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복잡다변한 이용방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세계의 국가급 목록센터의 건설은 전국적인 역사기록자료로 하여금 ...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이며 풍부하고 체계적인 다원화관리와 이용방식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기록정보자원의 총체적 성능을 증가시켜, 국가의 기록검색체제의 수립, 기록보존소 사이의 정보교류와 개발기제를 건전화시키는데 중요한 첨경임은 의심할 바 없다. 목록센터의 건설은, 크게는 중국기록부문이 전자정보망시대에 생존,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³³⁾

33) 「國家檔案局, 中央檔案館關於印發全國革命歷史檔案資料目錄中心負責人會議文件的通知」(1996. 7. 2), 『文件匯集』 6, 534쪽.

이런 지향 아래 혁명역사기록에 대한 목록급 기술세칙도 만들어졌으니, 세칙제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혁명역사기록자원에 대한 개발이용의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급 혁명역사기록의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검색체계를 세우며, 기록보존소 사이의 정보교류, 자원공향(資源共享)의 기제(機制)를 건전화하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혁명역사기록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도록 하기 위해 본 표준을 특별히 제정한다.³⁴⁾

세칙은 기술(記述)항목, 표식부호, 형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각급, 각류의 기록보존소가 혁명역사기록문건의 전산목록을 편제하는데 적용하기 위함이다.(1.1~1.2)³⁵⁾ 기술항목은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다. 반드시 기술해야할 필수항목은, 기록보존소번호, 문서번호, 시간, 책임자, 제명(題名), 분류번호, 주제어 항목이다.(7.1~7.2)

표식부호는 8개(+ : () [] □ · ~ ,)로, 항목에 따라 부가설명, 유관설명, 고증, 결자(缺字), 외국어약어, 시작과 끝, 두 개 이상이 내용을 기술할 경우의 분할부호 등에 쓰인다.

20개의 항목의 기술에 사용하는 문자는 자부(字符)와 한자(漢字)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아라비아숫자 혹은 알파벳 혹은 양자를 혼합한 ‘부호’이고, 후자는 중국어로 직접 쓰는 것이다. 기록물 정리상의 기록물번호(전종번호, 목록번호, 파일번호, 문건번호), 해당문건의 마이크로필름번호,

34) 「革命歷史檔案著錄細則」(中華人民共和國國家檔案局, 1996. 2. 26 발표), (國家檔案局政策法規研究司法規標準化處 編, 『檔案工作標準匯編(二)』, 中國檔案出版社, 45~49쪽. 세칙은 부록을 참조.

35) 번호는 革命歷史檔案著錄細則의 문단부호.

부수, 쪽수, 문건시간, 분류번호(分類號,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상술) 등은 본래의 자부(字符)를 그대로 사용하며, 소장한 기록보존소, 비밀등급, 문건상황, 매체유형도 ‘부호화’하였다. 예컨대 기록보존소번호는 전국의 각급, 각류의 기록보존소에 부여한 번호이며, 비밀등급은 개방하지 않는 기록물에 한에서만 “K”를 기술하게 하였다. 또 문건상황의 경우 문건의 파손정도를 네 등급으로 나누어 부호를 부여하였고,³⁶⁾ 매체유형의 경우는 7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부호로 기술토록 하였다.³⁷⁾

자부로 기술되는 기술항목은 이전 카드식의 목록기술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문자(중국어)로 기술되는 기술항목은 카드식과는 크게 달라졌는데 이는 전산화를 위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카드식 목록 기술에서 문건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은 “제명(題名)”, “주제어(主題詞)”, “제요(提要)” 등의 항목이었다. 그중 제요(提要)는 문건내용의 간략한 소개나 평가로, 주제내용과 참고가치를 반영시키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3백자를 넘지 않았다.³⁸⁾ 그러나 기술세척에서는 “제요” 항목이 없어지고 그 대신, “자유어(自由詞)”, “지명(地名)”, “인물(人物)”, “조직기구(組織機構)”, “회의(會議)” 등의 항목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자유어는 주제어표(主題詞表, 후술)에 상응하는 주제어가 없거나 주제어 조합이 불가능할 경우 기술하는 것으로, 개념이 명확해야하고 의미가 분명해야 하며 실용성이 큰 단어이다.(11.18) “지명”, “인물”, “조직기구”, “회의”의 항목에는 기록 내용 중 관련되는 바 검색의의가 있는 지명, 인명, 조직기구, 회의명칭을 기술한다.(11.19~11.22) 서술형의 제요

36) 파손되어 완전치 못한 기록(A), 글자가 불분명하거나 오염된 기록(B), 표구된 것(C), 기타(D)

37) 녹음제품(LY), 영상제품(LX), 사진(ZP), 印信(YX), 마이크로필름(SW), 機讀性제품(JD), 기타(QT)

38) 陳兆謨主編, 『最新檔案工作實務』, 中國檔案出版社, 1996, 211쪽.

를 없애고 단어로 검색할 수 있는 지명, 인물, 조직기구, 회의의 항목을 추가한 것은 전산화에 따른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기록의 검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항목은 검색어인 주제어였다.

2) 검색어

후술하겠지만 중국의 목록기술은 검색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각지에 산재한 각종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기술한 목록을 하나의 목록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컴퓨터검색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화가 필요하였으니 앞장에서 본 기록물기술세칙은 기술항목, 표식부호, 형식, 방법의 표준화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제 각각의 기술항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록물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인데, 기록물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항목이 주제어이며, 이 주제어는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검색어이다. 검색어이기에 주제어는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더구나 컴퓨터검색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작업이었다. 검색어인 주제어를 표준화한 결과가 바로 주제어표(主題詞表)이다. 중국의 주제어표는 네가지가 있다. 즉 명청(明清)시대의 기록물, 중화민국(中華民國)시기의 기록물,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혁명시기의 기록물(즉 혁명역사기록물),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시기의 기록물에 대한 각각의 주제어표가 있다. 네가지의 주제어표를 만든 것은, 기록물 생성의 역사조건, 기록물 내용의 성격, 기록물관리의 방법이 각기 서로 다르고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서로 관련이 없으며, 동시에 기록물에 사용된 많은 명사술어가 서로 달라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³⁹⁾

신민주주의혁명시기의 기록물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조직된 ‘전국혁

39) 鄒步英 外 編著, 『〈中國檔案分類法〉使用手冊』, 中國檔案出版社, 1999, 140~141쪽.

명역사기록자료 데이터 수집표준 과제조(全國革命歷史檔案資料數據採集標準 課題組)가 앞절의 혁명역사기술세칙과 함께 주제어 색인화규칙 및 주제어표를 전국기록업무 표준화기술위원회에 제출하였다.⁴⁰⁾

제출된 주제어표는, ‘중국기록주제어표(中國檔案主題詞表)’와 중앙당안관이 컴퓨터에 입력한 혁명역사기록목록의 주제어 2만개에 의거하고, 동시에 혁명역사자료에서 수집한 주제어를 참조하여 편제되었다. 입력한 주제어는 8706개로 그중 정식 주제어가 7814개, 비정식주제어가 892개이다.⁴¹⁾

혁명역사기록물 주제어표를 편제한 후, 혁명역사기록물의 소장 수량이 많은 성(省), 시(市)의 기록관리국과 기록보존소 및 유관 전문가를 선택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1995년 9월 25일 전문평가심사위원회(專家評審會)⁴²⁾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제어표가 완성되었다. 주제어 색인화규칙은 주제의 내용과 활용범위, 주제분석, 주제어의 선정, 심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³⁾ 주제어표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⁴⁾

주제어를 선택하는 원칙은 먼저 사상성,⁴⁵⁾ 과학성, 실용성의 통일을 구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소장 기록물에서 주제어를 선택하며, 형태상 간결해야하고 개념상 명확해야하며 단의성(單義性)을 구유한 단어

40) 주)28 참조.

41) 國家檔案局中央檔案館〈全國革命歷史檔案資料數據採集標準〉課題組, 『全國革命歷史檔案資料數據採集標準』, 1997, 中國檔案出版社, 2쪽.

42)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中央檔案館, 國家檔案局, 檔案科學技術研究所, 中國人民大學檔案學院, 中國檔案出版社와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의 유관 전문가 및 학자.(같은 책, 3쪽)

43) 「革命歷史資料主題標引規則」(같은 책, 33~38쪽)

44) 「革命歷史檔案主題詞表」의 主表 및 範疇索引表(같은 책 附件 참조). 주제어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의 책 3~7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5)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사상을 주도사상으로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관점을 견지한다.

를 주제어로 선택하였다. 주제어표에는 인명과 지명은 수록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인명과 지명 중 검색할 의의가 있는 것은 각각의 기술항목에서 기술하도록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주제어표의 구조는 크게 주표와 범주색인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주색인표는 모든 주제어를 유목분류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주표는 정식주제어와 비정식주제어로 구성되는데 중국어의 발음표기인 한어병음(漢語拼音)의 알파벳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주제어의 항목에는 주제어의 ① 한어병음, ② 주제어, ③ 주제어 사이의 관계, ④ 범주호, ⑤ 주석을 포괄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갖고 설명해보자.

설명	주제어의 내용	설명
① 한어병음 ② 주제어 ③ 주제어 사이의 관계	KANGRITUANTI 抗日團體 [F5] D 反日團體 F 抗敵後援會 農救會 S 群眾團體 C 抗日運動	④ 범주호

“항일단체”이란 주제어(②)의 발음표기인 한어병음이 “KANGRITUANTI” (①)이며, “D 反日團體 / F 抗敵後援會 / 農救會 / S 群眾團體 / C 抗日運動”은 “항일단체”라는 주제어와 관련있는 주제어들이다. 주제어 앞의 D, F, S, C는 각각의 주제어가 “항일단체”와 갖고 있는 관계의 내용을 보여주는 문자이다. 주제어 사이의 관계는 동등관계, 소속관계(屬分關係), 상관관계 등 세가지이다. 동등관계는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서로 같거나 근접한 주제어의 관계로, 이들 중 하나를 정식주제어(Y)로 정하고 그 나머

지는 비정식주제어(D)가 된다. 위의 예는 “항일단체”가 정식주제어이고 “반일단체”는 비정식주제어임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반일단체”의 주제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FANRITUANTI

反日團體 [F53]

Y 抗日團體

예속관계는 개념상 예속적 관계를 지닌 관계로, 상위어는 ‘S’로, 하위어는 ‘F’로 표시한다. 앞의 예에서 “抗敵後援會”나 “農救會”는 “抗日團體”의 하위어이며, 반대로 “抗日團體”는 “抗敵後援會”나 “農救會”의 상위어이다. 마찬가지로 “群衆團體”는 “抗日團體”의 상위어이며 “抗日團體”는 “群衆團體”의 하위어이다. 예컨대 “抗敵後援會”라는 주제를 찾아가면 내용이 나온다.

KANGDIHOUYUANHUI

抗敵後援會 [F5]

S 抗日團體

상관관계는 주제어 사이에 동등관계와 예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색인과 검색 시 참조해야할 관계로 C로 표시한다. “항일단체”를 검색할 때는 “抗日運動”이라는 주제를 참고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抗日運動”이라는 주제를 찾아가면 “抗日團體”를 참고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KANGRIYUNDONG

抗日運動 [F54]

D 反日團體

救亡運動

C 抗日團體

주석은 범위를 한정하는 주석과, 관점·의미를 부여하는 주석이 있다. 전자는 주제어의 시간이나 공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주제어의 뒤에 괄호를 사용하며, 후자는 주제어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주제어 밑에 괄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BEIJINGZHENGBIAN

北京政變(1924) [A8]

(馮玉祥囚禁曹錕)

북경정변은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위의 예는 1924년에 발생한 북경정변으로, 풍옥상(馮玉祥)이 조곤(曹錕)을 감금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주제어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주제어 다음에 있는 범주호는 「혁명역사기록 분류표」 중 해당 주제어가 있는 분류번호이다. 예의 “[F5]”에서 “F”는 “군중단체(群衆團體)”를 의미하는 분류기호이며 “F5”는 “항일구망단체(抗日救亡團體)”를 의미하는 분류기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주제어표를 사용하여 주제어를 기술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의 제명, 제요, 전문(全文)의 내용을 파악해 검색할 의의가 있는 주제개념을 세운다. 다음에 주제어표나 범주색인표를

사용하여 주제개념을 주제어로 바꾼다. 확정된 주제어를 기술항목 중 “주제어”항목에 기술하는데 반드시 정식주제어를 사용해야 한다. 쓰는 형식은 본표 중의 용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기록물의 주제개념에 직접 상응하는 주제어가 주제어표에 없을 때에는 두 개 이상의 광범한 주제어를 선택하여 기술한다.⁴⁶⁾ 주제어표 중에 주제개념에 상응하는 주제어가 없고 또 여러개의 주제어로도 표시할 수 없을 때 가장 직접적인 상위개념 혹은 가장 가까운 개념의 주제어로 기술하며, 만약 이것도 적당치 않을 때는 자연언어에서 선택하여 기술항목의 “자유어”항목에 기술하는데, 이후 새로운 주제어의 등기를 요구받을 때 “전국혁명역사 기록자료목록센터”에 보고한다.

6. 혁명역사기록의 검색분류

1) 실체분류와 검색분류

앞장에서 본 기술세칙의 기술항목에는 문서번호(檔號)로서 전종번호(全宗號), 목록번호(目錄號), 파일번호(案卷號), 문건번호(文件號)등의 항목이 있다. 이는 문건의 계층별 번호를 나누어 기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술항목에는 분류번호(分類號)라는 ‘또하나의 문서번호’가 있다. 역시 앞장에서 본 바 있는 주제어표 내의 주제어 다음에는 범주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혁명역사기록 분류표」 중 해당 주제어가 있는 분류번호(分類號)를 가르킨다. 기술항목이나 주제어의 범주호에 들어가는 분류번호는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 ‘중국적 특색’이라고 할 수

46) 이 경우 주제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가장 가까운 주제어를 선택하며 수준을 뛰어넘어서(越級)는 안된다. 즉 상위어나 하위어로 기술해서는 안된다.

있는데, 예컨대 ISAD(G)의 기술항목에도 이런 분류번호는 없다.

그렇다면 문서번호(檔號)와 분류번호(分類號)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기록학계에서는 당연히 다른 분류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는 전종(全宗, 풍) 내의 기록에 대한 분류로 기록의 정리분류 혹은 실체분류라고도 한다. 즉 기록물 원건에 대한 분류이다. 반면에 후자는 기록의 검색분류라고 하는데, 예컨대 <중국당안분류법(中國檔案分類法)>등과 같은 분류법에 근거하여 기술이 끝난 문건 혹은 그 종합체의 조목을 상응하는 유목(類目)체계에 넣고 아울러 해당 조목에 특정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각종 검색도구를 만드는데 편리토록 하는 것이다. 정리분류와 검색분류의 몇가지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정리분류는 매건의 기록문건 혹은 파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기록물 실체를 분류하는 것으로, 예컨대 풍(全宗)을 구분한다든가, 풍 내 기록을 구분하는 분류 등이다. 반면에 검색분류는 먼저 문건 혹은 파일을 기술(記述)하여 조목(條目)을 만들고, 이후 조목에 대해 분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목록 혹은 색인을 만드는 것이다. 정리분류는 정리업무의 핵심으로 정리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으나, 검색분류는 기록관리자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산물이다.

둘째, 양자는 분류의 표준이 서로 다르다. 정리분류는 주로 기록이 생산된 규율과 특징(원질서)을 표준으로 삼는 반면, 검색분류는 주로 기록을 형성한 국가기관, 사회조직의 직능분공(職能分工)을 표준으로 삼는다.

셋째, 양자의 분류범위가 다르다. 정리분류는 통상 기록보존소나 자료관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주로 전종 구분과 전종 내의 기록을 분류하

47) 沈正樂 等 主編, 『最新檔案工作實務』, 中國檔案出版社, 1996, 90~91쪽.

는 것으로, 기록보존소나 자료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며 어떤 때에는 심지어 전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반면 검색분류는 어떤 경우 매우 큰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분류로, 기록보존소나 자료관의 한계를 넘어 전국 범위 내에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넷째, 두 분류의 요구와 작용이 다르다. 정리분류는 기록이 형성된 규율과 특징에 따라 문건 사이의 고유한 역사관계를 보지하여 분류로 하여금 업무활동의 본래의 면모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그 주요작용은 기록물 실체의 무질서를 조리있게 만드는 것으로, 기록물의 무질서를 유질서로 바꿈으로서 기록물의 배열위치를 고정시켜 보관과 조사를 용이하게 한다. 반면 검색분류의 주요 기능은 기록물의 내용과 성분을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일적이고 편한 검색경로를 제공하며, 신속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바의 기록정보를 획득케한다. 그 주요작용은, 분류목록의 편제나 목록센터의 건립,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공유(共有), 이용검색의 편리성 등이다. 이밖에 검색분류는 정리분류에 비해 표준화의 정도가 높으며, 분류번호가 정리분류의 그것에 비해 상세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정리분류와 검색분류는 양자 모두 기록물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공통성이 있고 따라서 양자를 통일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실천이 증명하듯이 양자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 분류방법은 다른 점이 많고 같은 점이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이다. 즉 정리분류는 검색분류의 부분적인 검색 효과를 갖고 있지만, 기록정보에 대한 검색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중국 기록학계의 입장이다.⁴⁸⁾ 바로 이런 입장을 관철한 것이 앞서 보았던 문건급목록센터의 건립이고, 또 하나가 '중국기록 주제어표(中國檔案主題詞表)'와

48) 같은 책, 92쪽.

방대한 ‘중국기록분류법(中國檔案分類法)’의 편제이다. 이를 위한 규정들이 필요하였으니, 이미 살펴본 ‘출처가이드 편제규범(全宗指南編制規範)’, ‘혁명역사기록기술세칙’ 등이 그 일부이다.

2) 검색분류법의 구조와 내용

중국이 기록검색분류법(中國檔案分類法)의 편제를 시작한 것은 1983년의 일이다. 1983년 2월 국가기록관리국(國家檔案局)은 기록관리업무의 표준화를 지도할 소조직(全國檔案工作標準化領導小組)을 만들었는데, 검색분류법의 편제도 이 소조직이 추진할 표준화업무 중의 하나였다.⁴⁹⁾ 1983년에 시작하여, 1986년 10월에 초고를 완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사이 중국 제1 역사기록보존소는 <청대 기록검색분류표(清代檔案分類表)>, 중국 제2 역사기록보존소는 <민국시기 기록검색분류표(民國檔案分類表)>를 완성하였다. 1987년 12월에 이르러 중국기록검색분류법(제1판)이 정식으로 출판되었다.⁵⁰⁾

제1판의 출판과 함께 제2판의 편제를 시작하였다. 출판 후 2년동안 제1판을 시험 사용해본 결과 검색분류법의 편제원칙과 체계구조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이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다. 참가인원 800여명, 총 600만자에 달하는 검색분류법이 1994년 12월에 완성되었다. 이 사이 ‘청대 기록검색분류표’와 ‘민국시기 기록검색분류표’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중앙기록보존소(中央檔案館)는 ‘신민주주의 기록(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를 편제하였다. 국가기록관리국은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1995년 10월에 이르러 ‘중국 기록 검색분류표’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었다.⁵¹⁾

49) 鄒步英 外, 『〈中國檔案分類法〉使用手冊』, 7쪽.

50) 같은 책, 19~20쪽.

51) 같은 책, 20~22쪽.

‘검색분류법’의 총체적 설계는 이른 바 ‘一法四表’制이다.⁵²⁾ 기록의 이용검색의 편리를 위해, 통일적인 분류방법,⁵³⁾ 통일적인 분류표준,⁵⁴⁾ 통일적인 편호(編號)제도 하에(一法),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4개의 주표(中華人民共和國檔案分類表, 新民主主義檔案分類表, 民國檔案分類表, 清代檔案分類表)로 이루어졌다.(四表)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법’(신민주주의당안분류법)을 통해 보자.

먼저 편제원칙으로, “혁명역사시기의 정권기구, 사회조직이 활동하며 실천한 직능분공을 기초로 기록의 내용과 반영하는 사물의 속성관계를 긴밀히 결합하여, 총(總)에서 분(分)으로, 일반(一般)에서 구체(具體)로”의 논리체계를 채용하였다.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는 기본대류와 주표로 이루어지는데, 기본대류(基本大類)⁵⁵⁾는 13개의 대류로 이루어져있다.

- A 정당
- B 정부(政務)
- C 공안, 사법, 법원
- D 군사
- E 코민테른, 외사(外事)
- F 군중단체

52) 中國檔案分類法編委會 編, 『中國檔案分類法(第二版)』, 中國檔案出版社, 1997.
 53) ‘검색분류법’은 응용의 편리를 위해 체계분류법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체계분류법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주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몇 개의 보조표(綜合復分表, 專用復分表, 專類復分表)를 두거나, 하나의 유목이 여러 방면에 관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방면에 類를 세우는 방법을 채용하였다.(鄒步英 外, 『〈中國檔案分類法〉使用手冊』, 141쪽)
 54) 사회실천의 職能分工을 주요 분류표준으로 삼았다.(같은 책, 141쪽)
 55) 민국시기 기록검색분류표는 16의 기본대류, 청대 기록검색분류표는 18개의 기본대류, 중화인민공화국 검색기록분류표는 19개의 기본대류를 설치하였다.

- G 문화, 교육, 위생, 체육
- J 경제업무(經濟工作)
- K 재정, 금융
- L 상업
- M 농업
- N 공업
- P 교통, 우전(郵電)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의 기본대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B 政務’와 ‘E 코민테른, 외사’이다. ‘B 政務’는, 중화인민공화국 검색분류표에서는 ‘B 국가정부총류’로 되어있다. 이는 해방 전 혁명근거지, 해방구의 인민정부는 아직 국가라고 칭할 수 없어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의 첫째 목표가 정권탈취와 정권수립이었기 때문에 ‘B 정부’ 대류 다음에 ‘민정(民政)’에 앞서 ‘정권건설’이라는 2급류를 두었다. 또 당시의 당정(黨政)간부는 모두 당의 기관조직부문의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A 정당’의 대류에 소속된 ‘조직’류(2급류) 아래에 ‘간부공작’류(3급류)를 두어 여기에 간부관리의 기록정보를 집중하였다.⁵⁶⁾ 한편 이 시기 중국공산당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이에 형성된 기록물의 수량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록을 외사(外事)와 병렬하여 놓았다.⁵⁷⁾(E 코민테른, 외사)

매 대류 아래에 속류를 두었는데, 보통 4급의 유목(類目)을 두지만 어떤 것은 5급의 유목을 두었다. 1급 유목 즉 기본대류는 13개, 2급 유목은 89개, 3급 유목은 246개, 4급 유목은 25개, 5급유목은 25개이다. 유목

56) 鄒步英 外, 『〈中國檔案分類法〉使用手冊』 책, 160쪽.

57) 王向明 主編, 『檔案文獻檢索』, 上海大學出版社, 2001, 64쪽.

의 부호는 알파벳과 숫자를 혼합하여 편제하는데 숫자의 경우 십진법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유목이 10개가 넘을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8진법을 채용하여 1부터 8까지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91’, ‘92’, ‘93’으로 사용한다. 유목들 사이의 관계는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예속관계로 ‘총론에서 각론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공통에서 개성으로’, ‘전국(全局)에서 국부(局部)로’ 나아가는 관계이다.⁵⁸⁾

- A 政黨 1급류
- A2 組織 2급류
- A25 幹部工作 3급류
- A252 幹部管理 4급류
- A2521 幹部任免 5급류

두 번째는 병렬관계로 동위관계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상위개념 밑에 있는 몇 개의 하위개념들 사이의 관계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경우로, 정당이라는 1급류의 상위개념 밑에 있는 2급류인 8개의 하위개념들은 서로 병렬관계이다.

- A 政黨 1급류
- A1 中國共產黨會議 2급류
- A2 組織 2급류
- A4 宣傳 2급류
- A5 對敵鬭爭 2급류
- A6 黨校工作 2급류

58) 같은 책, 53쪽.

- A7 機關工作 2급류
- A8 歷史事件 2급류

세 번째는 동일관계로, 정식유목과 비정식유목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낱말을 정식유목으로 하면 그 동의어는 비정식유목으로 괄호를 사용해 넣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즉 光化法은 정식유목이고, 感光法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비정식유목이다.

NK52617614 光化法(感光法)

마지막으로 교차관계는 외연상 일부의 내용이 중첩되는 관계로, ‘참견(參見, 참고하라)’라는 표시로 표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록검색분류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55 軍事制度研究

參見 HP267

HP267 軍制學

參見 D55 軍事制度研究

다만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에서는 집중원칙을 채용하였다. 즉 중국공산당 각급 조직이 형성한 기록은 그 내용이 당의 내무사무에 속하면 당무류에 넣고, 내용이 정권사무에 속하면 정무류에 넣었다. 예컨대 ‘도시공작방침, 정책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는 ‘B7 도시공작류’에 넣었고 ‘A 중국공산당 당무류’에 넣지 않았다. 교차관계를 보여주는 방법

으로는 주석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간부공작문제’는 당시 당·정부·군의 간부가 모두 당의 기관조직부문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류에 집중하였다.⁵⁹⁾ 예를 들면 ‘정부(B) 정권건설(B2) 간부공작(B25)’, ‘군사(D) 군대정치공작(D2) 간부공작(D22)은 모두 ‘정당(A) 조직(A2) 간부공작(A25)’에 집중하고 주로 처리하였다.

B 25 幹部工作

[A25]에 들어간다.

D 22 幹部工作

[A25]에 들어간다.

주석은 교차관계를 보여주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해당 유목(類目)의 내용범위를 지정하거나 소속관계를 지정해주기도 한다.

A212 組織設置

기구건립, 합병, 이름변경, 취소, 영도기관의 변경 등은 여기에 들어간다.

B11 人民代表大會

工農兵 소비에트대표대회는 여기에 들어간다.

D12 情報

첩보, 정찰, 외군정보는 여기에 들어간다.

59) 中國檔案分類法編委會 編, 『中國檔案分類法(第二版)』, 9쪽.

혁명역사기록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록물의 주제가,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하여 ‘분류번호(分類號)’라는 기술항목에 기술하는 것이다. 분류표 중 적당한 유목이 없을 경우 비슷한 유목과 상위유목을 기술할 수 있으며, 또 여러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여러개의 분류번호를 기술하며 분류번호 사이에 ‘;’ 표시로 구분한다. 검색어인 주제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주제어를 선정하면 이 주제어가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 중 어떤 유목에 해당하는가를 찾아 주제어 다음에 있는 범주호에 넣어주는 것이다. 주제어표 뒤에 부록으로 달린 〈혁명역사기록 범주색인표〉는, 주제어표의 주표 중에 나오는 모든 주제사를 유목분류에 따라 배열하여 검색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보조성 공구이다.⁶⁰⁾

〈혁명역사기록물 기술세칙〉, 〈혁명역사기록자료 주제색인화규칙〉, 〈혁명역사기록자료 분류색인화규칙〉 등의 규칙들이 정해지고,⁶¹⁾ 이에 〈혁명역사기록 주제어표〉(주표와 범주색인표), 〈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냄으로서, 혁명역사기록물에 대한 목록기술과 검색분류가 완성된 셈이다.

7. 맺음말

중국은 기록물의 생성조건, 내용성격, 관리방법, 사용된 명사술어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기록을 보존할 뿐 아니라 관리도 달리하고 있다. 물론 네가지의 기록물에 대한 기술이나 분류도 달라하

60) 國家檔案局中央檔案館〈全國革命歷史檔案資料數據採集標準〉課題組, 『全國革命歷史檔案資料數據採集標準』, 467~610쪽.

61) 이외에 〈혁명역사자료 기술세칙(革命歷史資料著錄細則)〉, 〈혁명역사기록자료 기독목록 DB교환방식(革命歷史檔案資料機讀目錄軟磁盤數據交換格式)〉이 있다.

고 있다. 네가지 기록이란 명청(明清)시대의 기록물,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의 기록물,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혁명시기의 기록물,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시기의 기록물이다. 따라서 네가지 종류의 기록물에 대한, 검색분류표, 기술세칙, 주제어표 등에 대한 각각의 규정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네가지 종류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 기록학적 방법론은 일관되어 있으니, 검색분류표에서 말하는 이른바 '일법사표(一法四表)'가 그 표현이다. 우리의 기록관리법령이나 기록관리 현실에서는 기술규칙이나 검색분류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본고는 이런 우리의 현실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신민주주의혁명시기의 기록물, 즉 혁명역사기록물에 대한 중국의 기술규칙과 검색분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지 기술규칙의 형식이나 분류방법만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필드상에 어떤 기술항목을 넣고, 각각의 항목을 기술할 때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의 기록물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학습'해야할 것은 기록관리선진국이 자신의 기술규칙이나 분류표를 어떤 과정으로 통해 만들어냈는가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최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의 기술은 단지 기록물관리상 필요할 뿐 아니라,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물에 어떤 내용이나 정보가 어떻게 들어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최적의 기술형식을 만들어내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술의 중요한 목적이 검색에 있다면 이는 표준화를 요구한다. 이 표준화는 전산화에 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공적인 카드식 목록기술에도 표준화는 필요하다. 표준화도 단순히 기술형식의 표준화만이 아닌 주제어 등 내용을 규정해주는 언어, 기록의 매체 등등 다방면에서 표준화를 요구한다. 다

만 표준화가 전자관리시스템 하에서는 필요충분조건이어서, 표준화가 없이는 관리나 이용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기록관리에 있어 기술 규칙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기록물에 대한 기술은 왜 필요한가. 기술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바탕 위에 출발해야 하리라 생각한다.